

# 2021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

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.

## 1. 아이돌봄지원사업

-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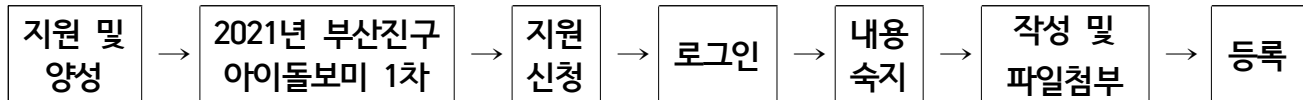
## 2. 신청대상 : 부산진구, 동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

- 2020.11.18.일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, 동구에 주소를 둔 자
- 우선채용: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소지자 / 영아 돌봄 가능한 자 / 시간제 돌봄 17:00-19:00 활동 가능한 자

## 3. 모집개요

- 모집기간 : 2020. 11. 18.(수) ~ 2021. 1. 12.(화)까지
- 모집인원 : 00여명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(홈페이지 주소: <https://care.idolbom.go.kr>)

### ※ 온라인신청방법



★ 파일첨부 위치 : 맨 밑 추가 제출 서류 (아이돌보미양성교육수료증(선택)) 첨부

- 제출서류
  - 공통서류 :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(첨부파일 작성) ② 자기소개서 1부(첨부파일 작성)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(첨부파일 작성) ④ 주민등록등본 1부(발급일자 3개월 이내)
  - 추가서류 (⑤,⑥,⑦는 해당자만 제출)
    - : ⑤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1부 ⑥ 경력증명서 1부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
### ※ 양성교육 감면 대상

- 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: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(1~3급)
- 2)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: 유치원 정교사(1급·2급)·준교사
- 3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: 정교사(1급·2급), 준교사, 전문상담교사(1급·2급), 사서교사(1급·2급), 실기교사, 보건교사(1급·2급) 및 영양교사(1급·2급)
- 4)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: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및 간호사

## 4. 전형절차

- 1차 : 서류심사
- 2차 : 인·적성 검사(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)
- 3차 : 면접심사(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)
- 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

## 5.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

<p>양성교육 대상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일정 : 2021. 2. 17.(수) ~ 3. 5.(금)</li> <li>○ 교육시간 : 80시간 (* 교육출석률 90%이상일 경우 교육 수수료 인정)</li> <li>○ 교육장소 :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</li> <li>○ 교육내용 :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,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등 80시간</li> <li>○ 교육비 : <b>20만원</b> (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6개월 이내 120시간 의무활동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)</li> <li>○ 현장실습 : 20시간(서비스제공기관)</li> <li>○ 절차 : 1차 서류심사 → 인·적성검사 → 2차 면접 → 합격자 발표 → 양성교육 80시간 이수 → 현장실습 20시간 → 활동</li> </ul>
<p>양성교육 감면 대상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일정 : 추후 안내</li> <li>○ 교육시간 : 추후 안내</li> <li>○ 교육장소 : 추후 안내</li> <li>○ 교육내용 :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,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등</li> <li>○ 교육비 : <b>2만원</b></li> <li>○ 현장실습 : 20시간(서비스제공기관)</li> <li>○ 절차 : 1차 서류심사 → 인·적성검사 → 2차 면접 → 합격자 발표 → 현장실습 20시간 → 활동 → 보수교육 이수</li> </ul>

## 6. 아이돌보미 보수

- 활동수당 : 시간당 8,730원(2021년 예정)
  - 주휴수당, 야간·휴일 근로,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
  - ★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(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) 주휴일, 연차유급휴가, 퇴직금 등 제외
-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: 40시간(법정근무시간) + 12시간(연장·휴일·야간근로)
- 4대보험 가입 (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)

## 7. 아이돌보미 직무

-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
  -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, 학교, 학원 등·하원지도, 안전·신변보호 처리, 준비물 보조 등(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)
  -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(건강, 영양, 위생, 교육 등)

## 8. 유의사항

- 아동 기준,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
- 신청서에 기재 착오,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-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-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, **겸업불가**